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4
----------	-----

제출년월일 2000.
제출자 제천시장

제안이유

- '99년 12월 개정되어 2000. 1. 1부터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세조례의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기 위함

주요골자

- 시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방법 개선에 따른 정비
- 재산세의 과세대상 내용의 정비
-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 주행세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의 조례반영
- 농지세의 세율 조정에 따른 정비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참조

붙임 : 1.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제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4. 주행세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시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의·의결 및 과세표준의 운영 기타 시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시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제2항 본문중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를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세대상 등) ①재산세는 시안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2. 선박 :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다만,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3. 항공기 :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을 관할하는 시

제39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1,000원미만”을 “2,000원미만”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장에 제3절의2(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주행세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0조의4(신고납부 등) ①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기한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시가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②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

③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중 과세표준 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 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2만원+4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72만원+1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672만원+4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4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생략)</p> <p>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신설></p> <p>4. ~ 7. (생략)</p> <p>③(생략)</p>	<p>제3조(세목)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1. ~ 3.(현행과 같음)</p> <p>4. 주행세</p> <p>5. ~ 8. (현행 4.~7호와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제9조(시세심의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시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p> <p>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⑤(생략)</p> <p>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시세심의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의·의결 및 과세표준의 운영 기타 시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삭제></p> <p>③시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⑤(현행과 같음)</p> <p>⑥시세심의위원회 -----</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p> <p>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 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p>	

현행	개정 (안)
	<p>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p>
<p>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p>	<p>제23조(과세대상 등)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p> <p>②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2. 선박 :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다만,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3. 항공기 :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계장을 관할하는 시
<p>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②(생략) <신설></p>	<p>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②(현행과 같음)</p> <p>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p>

현행	개정 (안)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 -----2,000원미만-----</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절의2 주행세</u></p> <p>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p> <p>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p> <p>제40조의4(신고납부 등) ①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기한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시가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로 본다.</p>

현행	개정 (안)
	<p>②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p> <p>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p> <p>③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신설></p>	<p>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p> <p>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안)
	<p>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6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p> <p>(과세표준) (세율)</p> <p><u>400만원이하</u>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p> <p><u>400만원초과</u> 12만원+400만원초과</p> <p><u>1,000만원이하</u> 금액의 100분의 16</p> <p><u>1,000만원초과</u> 108만원+1,000만원초과</p> <p><u>2,500만원이하</u> 금액의 100분의 27</p> <p><u>2,500만원초과</u> 513만원+2,500만원초과</p> <p><u>5,000만원이하</u> 금액의 100분의 38</p> <p><u>5,000만원초과</u> 1,463만원+5,000만원</p> <p><u>초과금액의 100분의 50</u></p>	<p>제46조(세율) -----</p> <p>-----</p> <p>-----</p> <p>-----</p> <p>(과세표준) (세율)</p> <p><u>400만원이하</u>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p> <p><u>400만원초과</u> 12만원+400만원초과</p> <p><u>1천만원이하</u> 금액의 100분의 10</p> <p><u>1천만원초과</u> 72만원+1천만원초과</p> <p><u>4천만원이하</u> 금액의 100분의 20</p> <p><u>4천만원초과</u> 672만원+4천만원초과</p> <p><u>8천만원이하</u> 금액의 100분의 30</p> <p><u>8천만원초과</u> 1천872만원+8천만원</p> <p><u>초과금액의 100분의 40</u></p>